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23. 12.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목 차

I.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 | |
|--------------|---|
| 1. 성희롱 | 1 |
| 2. 성폭력 | 6 |

II.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 | |
|----------------------------------|----|
| 1. 사건처리 흐름도 | 9 |
| 2. 상담단계 | 9 |
| 1) 상담기구의 주요 업무 | 10 |
| 2) 상담단계에서 안내할 사건 해결을 위한 개요 | 12 |
| 3) 상담단계 업무담당자 역할 | 14 |
| 3. 조사단계 | 15 |
| 4. 심의단계 | 16 |

III.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IV. 성희롱·성폭력 사건 유형별 스토리텔링

| | |
|---------------------------|----|
| 1. 인턴-인턴기업 담당 가해행위자 | 18 |
| 2. 인턴-인턴 간 성폭력 | 24 |
| 3. 디지털 성폭력 | 28 |

| | |
|-------------------|----|
| 관련법령 | 30 |
|-------------------|----|

| | |
|-------------------|----|
| 관련서식 | 33 |
|-------------------|----|

| | |
|-----------------------|----|
| 피해자 지원기관 | 45 |
|-----------------------|----|

들어가면서

♣ 매뉴얼의 목적

인턴십 중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다른 공공조직이나 민간회사에서 드러나는 유사 사건들과 특성이 다릅니다. 발생의 맥락과 피해의 성격이 다르고, 그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인턴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유형에서 사건이 비롯됩니다.

이 매뉴얼은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이며 재외동포청에서의 사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에게 혹은 본인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본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사건 유형별 스토리텔링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관련 법령, 관련 서식,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P. 1 ~ 8)

- 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P. 9 ~ 17)

-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방법이 궁금할 때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P. 17)

- 실제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알고 싶을 때

유형별 주요사례(P. 18 ~ 29)
관련법령, 서식 (P. 30 ~ 46)

1 성희롱 · 성폭력의 정의

1.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 일반적 개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법적 개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립요건

| 주 체 | 객체 | 행위의 발생 | 행위의 방법 | 행위의 피해 |
|---|-----|----------------------|---------|---|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불특정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 성희롱의 판단기준

○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즉, ①행위자와 ②피해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가 ③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④성적 언동 등이어야 하고, ⑤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① 성희롱의 주체(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사업의 경영담당자** :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예) 소관이사

-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근로조건 결정, 집행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구직자, 파견근로자 포함)

- 민원인: 법령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민원인이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제재할 수 없음

- ▶ 다만, 사업주는 만원인 등으로부터 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을 느낀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 ▶ 또한, 민원인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② 성희롱의 객체(피해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로부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

-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자 : ‘근로자’로 한정되며,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는 ‘직장내 성희롱’의 적용을 받지 못함(※ 남녀고용평등법 상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해자 :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행위자인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로부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③ 성희롱의 발생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업무 관련성이란 포괄적 업무관련성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판례)

-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 출장 중인 차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 워크샵 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

④ 성희롱 행위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동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야 함

- 성적 언동: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
 - ※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유 형 :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참조

| 구 분 | 정 의 | 성희롱 인정 사례 (판례, 결정례) |
|--------|---|---|
| 육체적 행위 | <p><u>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면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 언어적 행위 | <p><u>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매체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OO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탕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인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OO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 구 분 | 정 의 | 성희롱 인정 사례 (판례, 결정례) |
|--------|---|---|
| 시각적 행위 | <p>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빠히 쳐다보는 것 |
| 기타 | <p>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이므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예 : 귀나 볼을 만지는 행위,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등)

⑤ 성희롱의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피해자)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

⇒ 이 감정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함

▶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고용상 불이익: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2. 성폭력

1)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근거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모든 성폭력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성폭력인 것은 아님
- ※ 성폭력에는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

2) 유형

| 범죄유형 | 성립요건(침해방식) |
|---|---|
| 강간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는 행동 ※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적 행사를 의미 |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성립 |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위계: 상대방이 알지 못함, 착각, 오인을 이용 ※ 위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 |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
|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 요구 불응하는 경우 |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3) 디지털 성폭력

○ 개념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유형

| 유형 | 내용(특징) | 적용법률 | 예시 |
|-----------------|--|---|--|
| 촬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구분 : 설치형 / 직접 촬영형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없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 재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하는 행위 |
| 유포협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형법」 제283조(협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 간 이별시, 혹은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 유통/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하거나 및 협력하는 행위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92조, 제10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 |
|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는 행위 ▶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등 |

<참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비교

1) 공통점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

2)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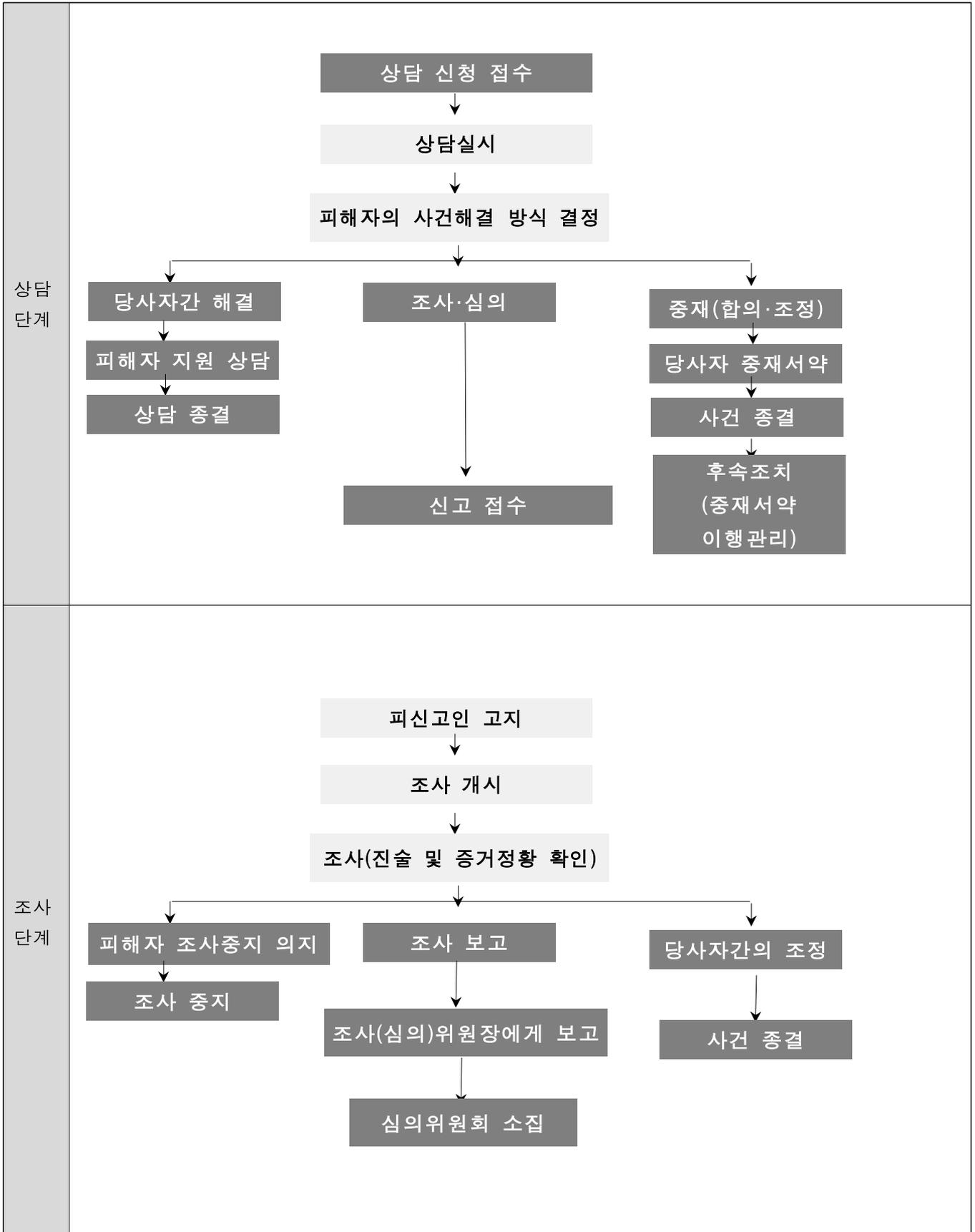
- ▶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 과 「형법」 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음.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 성희롱 :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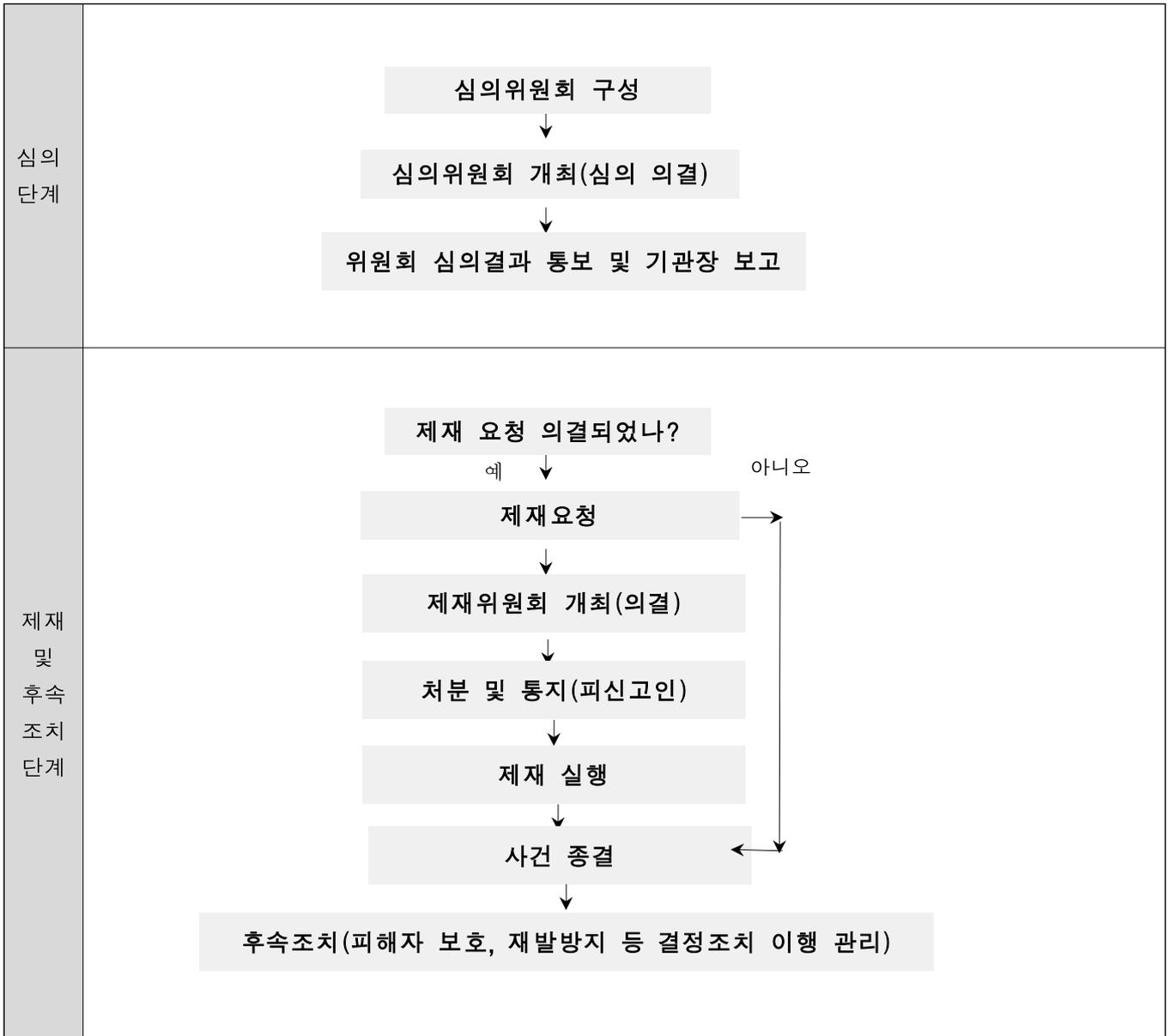
3) 유의점

-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과 「형법」 이 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다더라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성폭력처벌법」 과 「형법」 에 따라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됨
-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 및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은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통해 결정되나, 이 경우에도 청장은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사건처리 흐름도





2. 상담단계

1) 상담기구의 주요 업무

| 상담 단계 | 상담 개요 | 주요 업무 |
|-------|-------|---|
| 접수 상담 | 접수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신청 접수 ▫ 상담내용 녹음 동의 ▫ 심리적 지지를 통한 라포(rapport) 형성 ▫ 청 지침 및 사건처리제도 안내 ▫ 비밀유지원칙 및 피해자 보호 안내 |
| | 고충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당사자 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와의 관계 파악 ※ 가해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안내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개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행태 및 유형, 피해특성, 지속기간, 반복정도 등 ▣ 증거정황 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증인 인적사항 및 연락수단, 증거자료, 일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진료기록 등 ※ 상담단계에서는 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와 증거확보 관련한 안내만 하고 구체적인 증거 제출은 신고 후에 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 피해자 대응 및 가해행위자의 전후 행동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행위자의 언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경험 이후 피해자의 행동(누구와 해당 사안을 상의했는지, 가해행위자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사건발생 이후 가해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가해행위자의 이전 유사 언동 여부 등 ▣ 사건이 야기한 고충(어려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행위자 언동으로 인한 신체손상, 심리·정신적 고통, 학습·교육·연구·근로환경악화 및 불이익, 신체·심리·사회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 상담신청의 계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관련 상담의 계기, 동기 - 사건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목적,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
| 상담 과정 |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 방향 탐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사건 해결방향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에 대한 이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것, 예상되는 최상의 상황,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 ▣ 가해행위자·청에게 원하는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 가해행위자 조치 혹은 징계요구, 공간분리,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
| |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 방안 검토 및 선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해결방안의 장단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행위자와의 당사자 간 해결, 청을 통한 중재 해결, 청의 조사 및 심의 해결,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해결, 사법적 해결 ▣ 상담신청인이 원하는 해결방안 선택 |
| 상담 종결 | <p style="text-align: center;">상담 종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선택한 해결방안에 대한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신고서 접수, 중재(조정, 합의) 절차와 당사자 간 해결 절차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 등 ※ 중재(조정, 합의) 절차는 사건신고 접수 후 진행할 수도 있음 |
| | <p style="text-align: center;">문서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리, 개인정보 비실명, 별도 보관, 기밀 유지, 필요시 문서결재 |

2) 상담단계에서 안내할 사건 해결을 위한 개요

○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방식 결정

- 피해자가 상담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해결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 크게 아래 세 가지의 해결방식이 가능함.

① 청 해결

- 합의·중재를 통한 처리와 조사·심의를 통한 처리가 있음. 피해자가 합의·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때는 청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가해행위자의 제재를 원할 때는 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조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

② 사법적 해결

-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등을 원하는 경우는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민간 상담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무료법률상담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등을 안내

③ 당사자 간 해결

-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피해자가 스스로 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하여 가해행위자가 이를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임

- ※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가해행위자를 만나게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거나 오히려 사건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소통방식에서 각별한 유의 필요

○ 청 사건해결 방향

- 청에서의 사건해결은 크게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함.

첫째,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2차 피해 방지, 피신고인의 공간분리조치,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 공동체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협력 등)을 실행하는 것.

둘째, 피해발생에 대해 가해행위자의 정당한 행위책임자의 수준(징벌적 책임 등)을 정하고 가해행위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개선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

셋째, 성평등 문화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것임.

○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제공

-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피해당사자로서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피해자에게 업무담당자가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의 방식들을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로서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험이기도 함
- 가해행위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요구되는 것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도 있음
- 가해행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의 방식들
 - ① 잘못 인정과 사과
 - ② 공간분리(업무, 교육 등)
 - ③ 가해행위자 개선을 위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향상, 재발방지 등)
 - ④ 가해행위자 심리치료(음주문제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등)
 - ⑤ 사회봉사활동
 - ⑥ 행위 재발방지 약속
 - ⑦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지급
 - ⑧ 청 지침에 따른 제재
 - ⑨ 사법적 처분

○ 청 중대처리 절차 개요

- 피해자가 중재처리를 결정→중재요청서 제출→피해자가 원하는 중재 사항을 정리→상담기구에서 가해행위자에게 중재요청 접수를 알리고 비밀유지를 약속 받은 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

가해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면, 청에서 중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중재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하고 양 당사자가 중재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함→청은 가해행위자의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당사자 모니터링을 함

○ 청 조사-심의 절차 개요

- 사건신고를 접수한 상담기구는 사건당사자 양측에 조사개시를 통보함→업무담당자가 각각 당사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을 진행함→심의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다음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인정되면 의결사항(공간분리, 사과문 제출 등)을 결정→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 ※ 피해자가 출석 진술을 원치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그 밖의 제출자료, 조사면담 내용을 근거로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음

3) 상담단계 업무담당자 역할

- 상담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상담과정에서 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내용 및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1. 고충상담 시 유의사항

- 1) 피해자 및 신고인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도록 상담실 등 독립된 상담공간에서 상담한다.
- 2) 상담과정에서 호기심에서 비롯한 질문이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 3) 업무담당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고충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조력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하나,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표하여서는 안 된다.
- 4)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2. 고충상담 시 대화법

- 1) 처음 상담을 하는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해야 한다.
- 2) 피해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닫는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 닫는 질문 | 열린 질문 |
|--------------------|------------------------------|
|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졌나요?” |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 났어요?” |
|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 “그에 대해 본인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 |
|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

- 3) 경청과 공감을 위해서는 “네. 그렇군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라고 객관적인 언어로 확인한다.

3. 조사단계

1) 피신고인 고지

-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행위가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사실을 고지
- 고지방법은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피신고인 고지 문서(공문) 발송을 병행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

[문서 제목] '사건접수 및 조사개시 고지'

[문서 내용] 관련근거, 조사개시(신고일시, 고지대상), 서류제출 기한(당사자 서약서, 진술서, 증거정황자료),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지침서 첨부

2) 조사

- 조사는 접수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려내고,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제출 내용이 취합된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함
- 사건을 신고 접수받은 날로부터 조사처리 기한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¹⁾
- 조사자는 조사 시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가해행위자), 당사자(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인의 진술 청취,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진술을 청취할 때는 비밀유지 및 진술의 객관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녹취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사법기관의 고소 사건 및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사건)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명시적으로 원하여 청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조사 및 심의처리 경과 개요를 사건당사자에게 1-2주 간격으로 발송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유지함

1)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에서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4. 심의단계

1)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체 위원 중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비²⁾를 고려하여, 위원 중 성평등 및 성범죄 관련 외부전문가³⁾를 포함하도록 권장함

2) 심의위원회 소집 준비

-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안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함에 따라 청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안내' 문서를 발송함
-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이 제출한 진술서, 증거정황자료의 사본 등에서 실명을 모두 비실명 처리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모든 자료는 회의 현장에서 배부하였다가 회의 종료 시 회수함

3)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피해자와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 후에는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각 당사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신빙성을 여부를 살피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그 인정사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결정함
-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신고인 처분 판단, 피해자 보호의 구체 방안을 논의함
-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조치 및 현 상태에 따른 추가조치, 사안의 경중 그리고 피신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합의 함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의결사항]

- 사실관계 인정
- 인정된 사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행위의 심각성 판단
- 피해 범위 및 피해 영향 판단

2) 여성가족부는 위원회의 성비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3) 여성가족부는 6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평등 및 성범죄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혹은 제재의 필요성 판단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기타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에 : 사건당사자 분리 등)

3 사건처리 서식 및 기록물 관리

- 모든 사건처리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민감 정보에 해당되므로, 사건 처리 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 관련 자료 작성 시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사건처리 전반 문서 및 파일 등은 기록물 보관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 잠금장치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기록물 보존기한은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르거나 보존기한이 없다면 보존기한을 정하고, 보존기한 후 폐기하여야 함
- 사건처리 절차에 따른 서식 종류

| 유형 | 서식 종류 | 서식 작성자 |
|---------------|-------------------------------|------------------|
| 상담 | 상담 신청서 | 피해자, 가해행위자, 제3자 |
| | 상담 일지 | 담당자 |
| 중재 | 중재 요청서 | 피해자 |
| | 중재 합의서 | 피해자, 가해행위자(피신고인) |
| 조사 · 심의 | 신고서 | 신고인 |
| | 진술서 | 당사자, 관계인 |
| | 당사자 서약서(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 |
| | 참고인 서약서 | 참고인 |
| | 사건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문 | 안내문 |
| | 신고접수 및 조사개시 통보 | 재외동포청 |
| | 조사일지 | 담당자 |
| | 출석진술 통지 | 재외동포청 |
| | 출석진술 서약서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
| | 심의위원 서약서 | 심의위원 |
| | 회의자료 | 재외동포청/조사위원 |
| | 회의록 | 재외동포청/위원회 간사 |
| | 조사결과보고서 | 재외동포청/위원회 간사 |
| | 사건심의결과통지 | 재외동포청/위원회 간사 |
| 제재 요청 | 제재요청서 (사건자료(비실명 처리) 직접 전달) | 재외동포청/위원회 간사 |
| | 기타 | |
| 기타 | 신고 철회 신청서 | 신고인 |
| | 재심의 요청서 | 신고인, 피신고인 |

1. 인턴-인턴기업 담당 가해행위자

【사례1】

A는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합격하였다. 한류에 관심이 많고 졸업 후 해외에서 취업할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 터라 A는 인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들뜬 마음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였다. OO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업무 면에서는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인턴 기간에 퇴근을 하고도 회식자리에 남아서 어울려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의 문화는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다.

인턴이 끝나가던 어느 날 회식 중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A는 노래할 마음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턴 담당 과장이었던 B가 A를 끌어당기며 같이 노래를 하자고 하였다. 일어나지 않으려 했던 A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B는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노래를 시작하였다. 노래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 하지말라고 뿌리치자, '외국에서는 다 그러지 않냐'며 오히려 B가 황당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직원들과 인턴들도 있었지만, 다들 눈을 피할 뿐, 아무도 B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A는 청 인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 사건 처리 사례 분석

| 신고인 | 피신고인 | 피해자 | 발생장소 |
|-------------------------|----------|-----------|-------------|
| 피해자 | 인턴기업 담당자 | 인턴 | 회사 밖(회식 장소) |
| 요구 처리방식 | 증거유무 | 주의점 | |
| 외부기관 의뢰 (피신고인 소속 기관) | 목격자 있음 | 청처리 가능 여부 | |

○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상담·신고 단계>

- 청 담당자가 인턴의 피해를 인지한 상황에서는 인턴이 청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청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는 것인지, 다른 대응과 처리를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함.
- 인턴이 청의 개입을 원하는 것이 파악된 상태에서는 그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
- 청 담당자는 인턴과 면담하여 인턴이 어떠한 처리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가해행위자가 비구성원인 경우 청에 통제권이 없기에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외부) 의뢰 형태로 처리 가능함을 안내해야 함. 즉, 피해자가 청에 요청 시,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공문으로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에 사건 처리 요청을 하는 것과 피해자가 직접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함. 또한 청의 지원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인턴이 청을 통한 중재(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를 원할 경우에는 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함. 청의 조사·심의를 통한 판단과 결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가능하고 이 결과를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에 보내어 사건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도 안내함.



<조사·심의 단계>

- 가해행위자가 비구성원이며 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외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함. 청이 인턴의 피해를 인지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가해행위자가 소속된 조직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가해행위자가 소속 기관(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구두 연락보다 청 명의로 된, 공적인 문서 형태로 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예:공문, 내용증명 등)
- * 청의 개입방향과 결정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행위자 소속 기관에 처리 요청시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피해 진술에 대한 내용을 공문에 첨부
 - 가해행위자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에 따른 조사와 가해행위자 심의 요청
 - 당시 목격했지만 방관한 구성원에 대한 조사 및 규정에 따른 조사·심의 요청
 - 청과의 공적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기를 당부하는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 요청
 - 가해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의사결정, 후속조치 사항 회신 요청 등



<종결·사후 조치 단계>

- 청은 ○○기업에 인턴을 많이 보내왔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기업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인턴의 피해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할 수 있음. 그러나 인턴의 피해에 청이 개입하는 것은 그 기업에 파견·입사할 인턴에 대한 보호와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청은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소 등을 통해 인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청 차원에서는 인턴 등 일정기간 외부(기업, 학교 등)로 파견하는 학생에 대해 사건 사고 발생시 청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을 사전에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
- 청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 하였다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턴이 입은 피해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조력을 해야 하며, 청에서 심리상담 지원이 안되는 경우, 외부와 연계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턴 상담 시 유의점

- 해외 파견 인턴 성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상담자는 외국 문화에 대해 편견 및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턴이 경험하고 지각한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함. 이를 위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사건 처리 이전의 상담 단계에서 인턴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 필요 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볼 수 있음(예: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차별감 척도 등)
 - * 문화적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했으며, 해외인턴이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척도
 - 문항 구성: 총36문항, 5점 리커트 자기보고식 척도
 - 하위 영역: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가지 구성
 - 척도 특성: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의미

· 문항 구분

| 스트레스 요인 | 관련문항 |
|------------------------------|--------------------------------------|
| 지각적 차별감 | 3, 9, 11, 14, 17, 23, 26, 29 |
| 향수병 | 1, 6, 21, 35 |
| 지각된 적대감 | 4, 15, 20, 24, 33 |
| 두려움 | 7, 18, 27, 31 |
| 문화적 충격 | 2, 13, 22 |
| 죄책감 | 10, 34 |
| 기타(사회적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문제 등) | 5, 8, 12, 16, 19, 25, 28, 30, 32, 36 |

· 전체 척도

-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집에 대한 향수병이 나를 괴롭힌다 | 1 | 2 | 3 | 4 | 5 |
| 2 |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 1 | 2 | 3 | 4 | 5 |
| 3 |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 1 | 2 | 3 | 4 | 5 |
| 4 |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려면 긴장된다 | 1 | 2 | 3 | 4 | 5 |
| 6 |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 1 | 2 | 3 | 4 | 5 |
| 7 | 내가 가진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나의 개인적인 안전이 걱정된다 | 1 | 2 | 3 | 4 | 5 |
| 8 | 나는 이곳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심(주저)하다 | 1 | 2 | 3 | 4 | 5 |
| 9 | 다른 사람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 1 | 2 | 3 | 4 | 5 |
| 11 | 이곳에서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2 | 이곳에서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 13 | 이곳에 온 이후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에게 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4 | 나는 이곳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 1 | 2 | 3 | 4 | 5 |
| 15 | 이 곳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6 | 이 곳 사람들이 나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한다 | 1 | 2 | 3 | 4 | 5 |
| 17 | 이곳에서는 나의 가치가 부정된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이곳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위축됨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20 | 이곳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1 |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 1 | 2 | 3 | 4 | 5 |
| 22 |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 1 | 2 | 3 | 4 | 5 |
| 23 | 이곳에서는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24 |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미워함을 나타낸다 | 1 | 2 | 3 | 4 | 5 |
| 25 | 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신분(지위)은 낮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26 | 나는 내가 가진 외모(신체, 복장 등)로 인해 다르게 취급받는다. | 1 | 2 | 3 | 4 | 5 |
| 27 | 여기는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8 | 나는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 1 | 2 | 3 | 4 | 5 |
| 29 | 나는 이곳 사람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다르게 취급받는다 | 1 | 2 | 3 | 4 | 5 |
| 30 |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 슬픔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31 | 나는 이곳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다 | 1 | 2 | 3 | 4 | 5 |
| 32 | 나는 이곳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33 | 이곳 사람들은 언어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1 | 2 | 3 | 4 | 5 |
| 34 | 나는 여기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 | 1 | 2 | 3 | 4 | 5 |
| 35 | 나는 친지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것이 슬프다 | 1 | 2 | 3 | 4 | 5 |
| 36 | 나는 여기 머물러야할지 돌아가야할지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미래가 걱정된다 | 1 | 2 | 3 | 4 | 5 |

* 지각된 차별감 척도: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Williams와 Kessler, Mickelson(1999)이 개발했으며, 해외 파견 인턴의 일상적인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됨

· 문항 구성: 9개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

· 척도 특성: 삶에서 불공정한 대우와 개인적 거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큼을 의미

· 문항 구분

| 요인 | 관련문항 |
|---------|---------------|
| 불공정한 대우 | 1, 3, 5, 7, 9 |
| 개인적 거절감 | 2, 4, 6, 8 |

· 전체 척도

- 지각된 차별감 척도 -

| 번호 | 문항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외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 2 |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 1 | 2 | 3 | 4 |
| 3 |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 1 | 2 | 3 | 4 |
| 4 |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 1 | 2 | 3 | 4 |
| 5 |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 1 | 2 | 3 | 4 |
| 6 |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7 | 여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 1 | 2 | 3 | 4 |
| 8 | 나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1 | 2 | 3 | 4 |
| 9 | 나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한다 | 1 | 2 | 3 | 4 |

2. 인턴-인턴 간 성폭력

【사례2】

- 신고인(B) 관점

A와 B는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동기 사이이다. 둘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A의 제안으로 A의 자취방으로 2차를 하러 갔다.

A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해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다. B는 자신이 침대 위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일어나보니 침대에서 A가 B의 옆에서 자고 있었으며 B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A도 옷을 벗은 채 자고 있었다. 깜짝 놀라 B가 옷을 챙겨 입자, A가 “잘 잤어?”라고 말해서 잘 잤다고 하고 얼른 그 방을 빠져나왔다.

B는 그 이후 바로 나와서 생각해보니 드문드문 만취해있던 자신의 몸을 A가 만진 기억들이 떠올랐다. B는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심경을 적어서 보냈다. B는 그 이후 고민하다가 약 한달 뒤 A와 마주치는 것이 괴롭고 이번 일에 대해 A가 모른 척하는 태도 등에 화가 나서 청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

- 피신고인(A) 관점

A와 B는 같은 회사 인턴 동기로서 B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뭔가 통하는 느낌이어서 편하게 여기고 함께 A의 자취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다. 둘은 술을 마시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A가 “우리 서로 헤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오늘 밤을 보내는 게 어때?”라고 말했을 때 B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었다. B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해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다. A는 B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했는데, B가 눈을 떴었다가 다시 감았다. A는 이것을 동의라고 여겼고, 그 뒤에 옷을 벗겼다. A는 강제로 벗기지 않았으며, 누워있던 B가 웃웃을 벗기 위해 등을 들기도 하여서 A는 B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일어나보니, B를 보고 A가 “잘 잤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헤어졌다.

A는 그 이후 뭔가 B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자신도 조심하며 지냈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 사건 처리 사례 분석

| 신고인 | 피신고인 | 피해자 | 발생장소 |
|---------|---------------------|----------|-----------------------|
| 피해자 | 인턴 동기 | 인턴 | 사적 공간 (피신고인 자취방) |
| 요구 처리방식 | 사건특징 | 증거유무 | 주의점 |
| 심의의결 처리 | 당사자 1:1사건 진술 불일치 | 정황증거만 존재 | 구체적 증거 없을 시 조사 포인트 |

○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신고 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준)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확보가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입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음식물 섭취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인근 경찰서로 신고하고, 도움이 필요시 방문지 재외공관 및 영사콜센터로 연락해야 함. 옷을 갈아입었다면 사건 당시 입은 속옷 등을 비닐이 아닌 코팅 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서 갖고 가야 함 ※ 국내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현재 문제를 신뢰할 만한 친구, 가족 등과 상의하는 것을 권유(신고인이 거부 시 강요할 수는 없음) -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피신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공간 분리를 원할 때 빠른 분리조치 필요 - 단, 분리조치는 심의의결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임시조치이므로 강제적이기보다는 피신고인의 협조를 구하여 이행 가능(이때 신고인에게 분리조치의 제한점 설명) - 분리조치 제한점: 인턴기업 안의 공간에서만 분리조치 할 수 있음. 피신고인에게 인턴기업의 모든 공간을 제약할 수 없음(인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고인과 있는 공간 외에 주요한 공간은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기업에 비밀유지 하에 공간분리에 대해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분리조치 실시 전 논의할 내용: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논의(근로 시간 조정 및 병가 인정), 부서 변동 방법 논의 등 - 청 내 신고절차 외에 별도로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 청에 상담하면서 수사기관 신고가 되는 줄로 잘못 아는 신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는 것임을 고지 |



<조사·심의 단계>

1) 조사단계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조사 시 유의
-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피신고인과 신고인 간 진술불일치가 있을 경우 다음의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필요

| | |
|-----------------------|---|
| A와 B의 진술이 불일치 할 경우 | 1) 피신고인이 행위는 인정하나 서로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할 경우 Q: 무엇을 동의로 보았나요? (예: 동의는 심신미약의 상태일 경우 인정될 수 없으며, 동의는 암시적, 비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 | 2) 피신고인이 행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Q: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
| | 3) 피신고인이 행위의 일부분만 인정하는 경우 :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나누어 기술 : 성추행의 경우 만진 횟수가 중요하지 않음.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것 또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조사함 |
| | 4) 성폭행한 것에 대해 인정할 경우 :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질문함 |

- 사건 조사 시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사이였고, 어떤 맥락에서 2차 술자리를 가게 되었는지 질문함. 사건 당시 질문으로는 성폭행이 일어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봄
- 구체적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확보하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조력함
- 정황증거는 신고인이 사건 직후 나와서 친구에게 연락한 카톡자료, 사건 이후 결석 정황 등을 제시 가능
- 사건 이후 사건 장소에서 나오게 된 상황, 그 이후 피신고인과 어떤 연락 등을 했는지, 이후 피신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맥락에 좀 더 개연성 확보를 위한 시도

2) 심의단계

- 진술이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은 진술의 일치하는 지점과 불일치하는 지점의 사건내용을 살펴보고 심의함. 이때 미리 진술분석표를 작성하여 회의자료에 포

함하면 검토하기 수월함

- 진술 불일치 시 심의위원들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얻을 2차적 이득이 있는지, 신고인의 주관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지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신고인이 형사절차 진행시 이와 별도로 청에서의 징계절차 가능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공간분리, 파견인턴 귀국 등)를 청 지침에 입각해서 논의하여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권고함
- 청 지침에 치료비 등의 배상을 조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침이 있다면 신체적심리적 치료비 배상을 논의함
- 피신고인의 재발방지과 개선을 위하여 재발방지 교육과 사과문 제출을 권고 할 수 있음



<종결·사후 조치 단계>

- 인턴이 입은 피해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조력을 해야 하며, 청에서 심리상담 지원이 어려운 경우, 외부 연계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과정과 심의 절차에서 사건을 알게되는 청 책임자 및 실무자, 인턴 기업 내 담당자에게 사건 내용 및 당사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함. 이때 공문은 보안 설정하여야 함

3. 디지털 성폭력

【사례3】

A는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을 진행하던 중 현지 남자친구 B를 만났다. 퇴근 후 B의 집으로 놀러갔다. B는 라면을 사오겠다고 하여 나갔고, A는 노트북이 잘 작동이 안되어서 B의 노트북으로 사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B의 노트북을 켰다.

A가 자료 검색을 위해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폴더에는 A를 포함하여 여자 이름들이 하위 폴더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A는 자신의 이름인 폴더를 클릭하였는데, 그 폴더에는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다. 찍은 줄도 몰랐던 평소 데이트 장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스킨십, 성관계 영상까지 A가 알지 못했던 촬영물이 가득했다.

너무 놀란 A는 B에게 말하지 않고 노트북을 들고 그대로 자취방을 나왔다. A는 B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B는 상황을 짐작하고 다 삭제할테니 제발 봐달라는 카톡을 보내왔다. A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어 친한 친구 C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C는 A의 노트북을 인계받아, 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게 되었다.

○ 사건 처리 사례 분석

| 신고인 | 피신고인 | 피해자 | 발생장소 |
|---------|-----------------------------|-------|-------|
| 제3자 신고 | 외부인 | 인턴 | SNS 등 |
| 요구 처리방식 | 사건특징 | 증거유무 | 주의점 |
| 조사-심의 | 외부기관 의뢰 (경찰, 기타 상담기관) | 물적 증거 | 2차 피해 |

○ 사건 처리 단계별 주의점 요약

| <상담·신고 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신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제3자가 신고함 - 신고 시, 피해자는 청 처리와 외부 처리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은 범죄에 해당하여 청+외부 처리의 동시 진행 가능성이 높음 <p>*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지 시, 외부 처리 방법</p> |

| | |
|---------------|---|
| 민간기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ttp://cyber-lion.com DSO(디에스오) http://www.dsoonline.org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번호 02-735-8994 |
| 경찰서 등 수사기관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취해 신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



| |
|--|
| <조사·심의 단계> |
| 1) 청 내 디지털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한계: 삭제된 영상물 복구 불가, 가해자 휴대폰 압수 조사 불가 등 |



| |
|---|
| <종결·사후 조치 단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는 2차 피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부 처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유포 확대 가능성 염두해야 함 - 삭제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연락처, URL(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주소),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원본 촬영물, 캡처 화면(URL, 키워드, 피해촬영물 등을 찍은 화면) 등이 있음 |

양성평등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5.19., 일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9호, 2020.9.22., 일부개정] |
|---|--|
|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p>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p>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p>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p> |
| <p>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p>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 <p style="text-align: center;">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5.19.,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9호, 2020.9.22., 일부개정]</p> |
|---|--|
| <p>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p>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p>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p> | <p>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p> <p>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6.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2. 제1항제1호·제2호·제6호및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p> |

| <p style="text-align: center;">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 2020.5.19., 일부개정]</p> | <p style="text-align: center;">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9호, 2020.9.22., 일부개정]</p> |
|--|--|
| <p>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p> | <p>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6.18.0>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
| <p>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p> |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신청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신청서

접수일자: . . .

접수자: (서명)

| | | | | | |
|----|----|---------|--|--------|--|
| 성명 | | 연락처 | | E-mail | |
| 소속 | 인턴 | 기업 | | 부서 | |
| | 기업 | 소속기업명 : | | 직급/직위: | |

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문제에 대해 상담받기를 원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고민 전반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에 필요한 정보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유 ④ 기타()

2. 상담하고자 하는 문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중복선택 가능)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메뉴얼 ②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③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정보 ④ 기타()

3.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주세요.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재외동포청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청인이 위 기재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담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약 서

1. 당사자의 권리

- 1) 당사자는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외동포청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는 자료(진술서, 전문가 소견서, 제반 증거자료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고,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누구든지 청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의무

- 1) 청에서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와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는 **사건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청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고인의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변호사 상담 또는 피신고인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상담의 경우 사건 내용에 관한 범위에 한하여 청의 사전 허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위협, 폭행, 고용상의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재외동포청은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이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등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조사·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중 재 당 사 자 서 약 서

사건번호:

1.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재외동포청은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권리

- 1) 당사자는 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는 자료(진술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피해 당사자는 중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누구든지 청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당사자의 의무

- 1) 청에서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와 자료 제출요구 등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는 **사건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청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고인의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변호사 상담 또는 피신고인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상담의 경우 사건 내용에 관한 범위에 한하여 청의 사전 허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당사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위협, 폭행, 고용 상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재 합의서

신 고 인 :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 :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본 중재 합의서는 20 년 월 일 재외동포청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중재(합의) 처리 요청에 따른 당사자 간 중재가 합의된 내용과 그에 따른 당사자 간 서약사항입니다.

합의 내용(예시):

- 1) 재발방지교육 **시간 이수
 - 2)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 개인사과문 작성
 - 3)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마주치는 경우 상호 회피
 - 4) 인턴십 종료
- ※ 합의 내용 별 각 이행시기, 이행 기간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재할 것

피신고인은 이 사건의 중재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단,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위 합의내용이 이행시기에 맞추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 관련 민·형사상 조치 및 이를 위한 상담 등 신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신고인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 (서명)
신 고 인 : (서명)

재외동포청장 귀중

신 고 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 | | | | |
|-----|------|---------------|-----|--------|
| 당사자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급 |
| | | 성별 남[], 여[] | 연락처 | E-mail |
| | 피해자 | 성명 | 소속 | 직급 |
| | | 성별 남[], 여[] | 연락처 | E-mail |
| | 피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급 |
| | | 성별 남[], 여[] | 연락처 | E-mail |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진술서

| 진술서 | | | |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분 | | 소속 |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
| 주소 | | | | | |
| 대상자 분류 | 피해자 / 행위자(피신고인) / 제3자 | | | | |
| 본인은 20 . . . 재외동포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 | | | | |
| 사건 개요 | a. 사건 개요(6하원칙에 기재) b. 사건 발생 당시 생각과 심경 c. 사건으로 인한 영향(일상생활/인턴 생활에서의 신체, 심리, 정신, 사회적 어려움 등) d. 사건경과(대응, 상대방의 반응, 주변인 반응 등) | | | | |
| 바라는 조치사항 | | | | | |
| 조사자 의견 | | | | | |
| 조사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안 내 문

1. 재외동포청은 년 월 일자로 피신고인 ○○○(소속 및 지위)에 대한 사건신고를 접수 받았기에 이를 알립니다.
2. 재외동포청은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지침에 의거하여 상기 접수된 사건을 조사 및 처리 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은 인턴십 참가 구성원으로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신고인에게는 진술서 및 출석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절차 진행 중 및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신고인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5. 청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및 책자 등을 동봉합니다.

재 외 동 포 청 장 (직인)

참 고 인 서 약 서

- 사건번호:
- 성 명:
- 전화 · 이메일:

1. 참고인의 권리

- 1)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참고인은 관련 자료(진술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숙지하였습니다.

참고인:

(서명 또는 인)

2. 참고인의 의무

- 1)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위증해서는 안됩니다.
- 3) 참고인은 본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 신상 등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재외동포청은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참고인이 진술서 등에 기재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조사·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1.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재외동포청은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구성원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거나 구성원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성희롱·성폭력 사안 포함)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2) 조사방법

신고 및 직권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기관)에게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사실조회, 감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건처리절차 등

(1) 사건처리 절차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심의위원회 구성→신고인·피신고인(또는 피신고부서)에 대한 기초 조사(전화 또는 출석)→심의위원회 개최(당사자,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진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기구 결정(각하, 기각,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재조치 등)→당사자 결과 통지

(2) 피신고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청은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한편 청은 서면진술서만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심의

재심을 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구제조치

- (1) 합의권고: 기관장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 구제조치 권고: 기관장은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3) 시정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 기관장은 의견침해 또는 권익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권리

- (1) 대리인 동반 및 선임: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답변거부권: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보호조치 요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불이익 금지: 청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 피신고인의 권리

- (1) 출석진술: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불이익금지: 청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 외 동 포 청 장 (직인)

피해자 지원 기관

| 구 분 | 지원 내용 | 연락처 및 정보 찾기 |
|-----------------|---|---|
| 해바라기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위기지원형: 365일 24시간, 의료법률, 법률, 수사지원제공 - 통합형: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 전국 기관 안내 |
| 여성긴급 전화136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로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 기관 - 긴급상담 - 보호: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 - 기타 기관(의료, 법률, 수사, 상담 등) 연계 | 전화상담: 1366 온라인 채팅, 게시판상담: www.women1366.kr 카카오톡상담: 카카오톡 친구찾기 '1366'검색→플러스친구에서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친구추가 |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활동과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 피해자 및 가족 지속 상담 - 수사, 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 신문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자 지원 신청 - 기타 기관(의료, 법률, 돌봄비용, 보호시설 등) 연계 | 전국 170개 운영 여성가족홈페이지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검색 |
|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차적인 의료지원을 제공,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 최소화-법의학적 증거확보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의료기관 - 의료: 응급키드(사건 후 72시간 이내) 증거물 채취,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 무료 진료 - 상담: 심리평가 및 치료(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전국 326개 전담의료기관 지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전담의료기관' 검색 |
| 보호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 위급상황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및 치료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지역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된 비공개 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상담, 수사-재판절차 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 | 전국 31개소 운영 해바라기 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입소 |

| |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 - 상담, 삭제지원, 수사, 법률, 기타 연계 | 전화상담: 02-735-8994 (평일 10:00~17:00) |
| 가정폭력 상담소 | <p>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담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의료·법률지원기관 또는 보호시설 연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성매매 피해 상담소 | <p>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센터 (서울지방경찰청) | <p>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즉시 보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찰관의 단기간 신변보호 - 사건처리절차 상담, 시설 연계 - 귀가 후 call-back 등 사후 관리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p>범죄에 의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간병비, 학자금 지원 -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 법률자문, 재판모니터링, 재판동행 - 주거환경 개선 | 전화상담: 1577-1295 www.kcva.or.kr |
| 스마일 센터 | <p>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임시주거시설 지원 - 법률상담, 수송구조, 전문가소견서, 재판모니터링 | www.resmile.co.kr |
| 정신건강 복지센터 | <p>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자살위기 개입 -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회복 지원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검색 전화상담: 1577-0199 |